

□ 농림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약품협회의 의견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축산위생과 제출 의견

1. 개정(안)중 제2조제7항에 대한 의견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정의는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가. 동물약품제조업체에서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광물질제 등을 주로 한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현행대로 존치해야 함.

나. 농림부의 개정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조항으로 삭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로 유통되는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코자 한다면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규칙에 포함하면 되는 것이지 사료첨가제를 사료관리법시행규칙에 정의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임.

다.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추가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구입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동물약품 업체에서 배합사료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사료로만 구입·사용토록 하는 일방적인 개정의지를 납득할 수 없음.

라. 제2조제7항 삭제와 사료첨가제의 단미·보조사료로의 분류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 보건 위해 유통구조 문란 및 유통단계 간소화 불가 등으로 개정취지가 가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 개정(안)이 입안되어 입법예고까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마. 관련한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또한 사료첨가제의 품질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축산농가를 기만하고 불량·저급의 원료 사용으로 중금속의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해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이 자명한 개정(안)으로 사료첨가제의 안전관리와 축산물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함.

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안)과 같이 공고·시행될 경우 우리 협회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기각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동물약품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행정가처분신청" 등 불합리한 행위를 시정키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임.

2.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

농림부의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있어서 개정 취지로 공고한 내용에 제시된 ○ 유통단계 축소, ○ 배합사료 원가절감, ○ 양축농가 부담 경감은 동 규칙 개정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예 의하여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이며 이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가.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 축소

- ㉠ 농림부 공고 제1998-62호(98. 7. 29)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보아 농림부가 개정취지로 공고한 유통단계의 축소는 이루어지 않음.
- ㉡ 동 개정령(안) 수정없이 공고될 경우 사료첨가제는 일부 품목은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겠지만, 비타민 · 아미노산 등의 원료는 소량 · 다품종으로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적인 취급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 ㉢ 신설되는 “주문용배합사료” 제조업체에서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를 제조하여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거나 단미 · 보조사료 업체에서 소량 사용되는 원료들을 수입하여 개별 원료를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게 되어 유통단계의 간소화는 기대키 어려움.

나. 배합사료 원가절감

- ㉠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가 간소화 되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키 어렵고 절감할 수 있다면 동물약품의 규격 ·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 저질의 미량광물질 등을 저가에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그 절감 효과가 얼마나 사료 판매가를 낮추게 될지는 의문임.
- ㉡ 제조 · 품질관리 체제의 불비로 각 단계별 품질확인이 어려워 표시량대로 정확히 사료첨가제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료첨가제와 사료 성분중의 동일 성분과의 구분 분석이 어려워 기술적 생산비 절감이 우려되고 있음.

다.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 간소화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공장의 생산비는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합사료 판매가의 인하는 기대키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인지 농림부는 다시한번 금번 두 개정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 ㉡ 사료첨가제의 제조와 사용에 있어서 약리학적 고려를 배제하고, 품질관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사료첨가제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충족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 ㉢ 유해 중금속 등이 관리되지 않아 가축이 집단 폐사하고 축산식품내 잔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을 농림부에서 감수할 수 있겠는가. 감수할 수 있다면 금번 개정(안)을 입안한 농림부 책임자를 실명화하여 공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결론적으로, 상기 1항과 2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동물용의약품등취규칙”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현재 축산상황과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관리제도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치 않은 채 성급한 유통 간소화 논리에 의하여 입안된 것으로서 전면 백지화하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 검토되어야 함.

[2]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축산경영과 제출 의견

1.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

농림부의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있어서 개정 취지로 공고한 내용에 제시된 ○ 유통단계 축소, ○ 배합사료 원가절감, ○ 양축농가 부담 경감, ○ 사료의 안정성은 동 규칙 개정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이며 이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가.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 축소

- ㉠ 농림부 공고 제1998-62호(98. 7. 29)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보아 농림부가 개정취지로 공고한 유통단계의 축소는 이루어지 않음.
- ㉡ 동 개정령(안) 수정없이 공고될 경우 사료첨가제는 일부 품목은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겠지만, 비타민 · 아미노산 등의 원료는 소량 · 다품종으로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적인 취급 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 ㉢ 신설되는 “주문용배합사료” 제조업체에서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를 제조하여 배합사료공장에 공급 하거나 단미 · 보조사료 업체에서 소량 사용되는 원료들을 수입하여 개별 원료를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하게 되어 유통단계의 간소화는 기대키 어려움.

나. 배합사료 원가절감

- ㉠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가 간소화 되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키 어렵고 절감할 수 있다면 동물약품의 규격 ·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 저질의 미량광물질 등을 저가에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절감 효과가 얼마나 사료 판매가를 낮추게 될지는 의문임.
- ㉡ 제조 · 품질관리 체제의 불비로 각 단계별 품질확인이 어려워 표시량대로 정확히 사료첨가제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료첨가제와 사료 성분중의 동일 성분간의 구분 분석이 어려워 기술적 생산비 절감이 우려되고 있음.

다.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사료첨가제의 유통단계 간소화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공장의 생산비는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합사료 판매가의 인하도 기대키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인지 농림부는 다시한번 금번 두 개정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 ㉡ 사료첨가제의 제조와 사용에 있어서 약리학적 고려를 배제하고, 품질관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사료첨가제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충족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라. 사료의 안정성 확보

- ㉠ 금번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보면 “사료의 안전성” 조항이 “사료의 안정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개정·공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 사료는 가축의 건강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은 포기하고 “안전성”이 문제 되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사료의 “안정성”만을 강화·관리하겠다는 것인지
- ㉢ 사료관리법 제1조의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제3조의 “안정성 확보”는 각각 사료의 무엇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성”과 “안정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키 어려우며
- ㉣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개념 구분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현 사료의 관리체제로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의 개념하에 사료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 ㉤ 곰팡이와 독소, 농약, 병원성미생물은 물론이고 유해 중금속 등이 “안전성”의 개념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가축이 집단 폐사하고 축산식품내 잔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림부에서 감수할 수 있겠는가.
- ㉥ 감수할 수 있다면 정책 입안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을 입안한 농림부 책임자를 실명화하여 동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기를 제안함.

결론적으로, 상기 1항과 2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현재 축산상황과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관리체도의 현실적인면을 고려치 않은 체 성급한 유통 간소화 논리에 의하여 입안된 것으로서 전면 백지화하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2.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

사료첨가제의 단미·보조사료로의 이중적 분류의견에 반대 함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첨가제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보조사료로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 ① 사료관리법상 소관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료첨가제의 유효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없으며
- ② 항생·항균제가 아닌 사료첨가제라 하더라도 현행 사료관리법 체제에 의한 사료의 개념으로 보관·취급·사용 되어서는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 ③ 이중적 관리체제로 인한 관리공백 사태를 초래하여 사전·사후관리 체제 붕괴로 인한 불량·저질의 사료첨가제의 유통을 방조하게 되며
- ④ 소량 다품목이라는 사료첨가제의 특성상 보조사료 업체를 통하여 개별 원료가 소분판매 되거나 위탁가공 형태의 새로운 유통단계가 신설되게 되어 개정(안)의 대의명분인 유통단계의 간소화를 기대키 어려우며, 현재 동물약품업체에서 배합사료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를 단미·보조사료 업체를 통하지 않고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다고 가정 하여도 사료 생산원가 절감액은 사료 전체 매출액 약 4조원의 0.09%에 지나지 않음
- ⑤ 사전·사후관리 포기로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사료와 사료첨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신만 초래될 것이며
- ⑥ 농산물의 직거래에 의한 유통 간소화와는 차원이 다른 사료첨가제를 국민보건보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개혁의 이름으로 불합리화 하는 것이며
- ⑦ 이러한 불합리는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품질저하와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망가져 가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재촉 하게 될 것이며
- ⑧ 사료첨가제의 취급에 관한 타당성 검토는 그 동안 수차에 거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되어 제반 여건상 현재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며
- ⑨ 국내의 제도여건과 축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료관리법을 사료의 수급이 아닌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 등취급규칙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한 관리이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간 상호공감하여 현재의 보조사료의 범위가 확정 되어진 것으로
- ⑩ 최근 두차례에 거친 사료관리법 개정시에도 사료첨가제를 보조사료로 분류 위하여 새로운 정의(첨가물사료) 신설과 보조사료 정의 보완(영양성분의 보충)하는 개정(안)이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료관리법을 개정치 못하고 차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규정이 정비되고 조건이 성숙 되었을시 법 제정을 선행하여 사료첨가제의 운용 범위를 확대키로 기결된 사안에 대하여
- ⑪ 중소기업을 도산케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료첨가제 취급을 자유화 하는 농림부의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동물약품업체나 사료업체를 위한 것이 아닌 축산농가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약품과 사료업체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인들을 통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과연 합리가 개혁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가 개혁 되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 ⑫ 동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농림부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동물약품업계는 합리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논리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깃발 아래 사료첨가제가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다시 한번 농림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으며
- ⑬ 동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있어 동물약품 업계의 의견에 대하여 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관련분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 ⑭ 동물약품 업계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대외적인 기관과 매체에 대하여 부당함을 표시하고 계속되고 있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 농림부의 행정 행위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
- ⑮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연쇄 도산과 사료첨가제 관리의 적정성 회복을 위하여 행정가처분신청과 동시에 특별법인 약사법과 사료관리법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법적 심리를 의뢰할 계획임.

3.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

① 제4조(보조사료의 범위) : 보조사료 범위 확대

-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사료를 관리하는 법령에 사용 되었다는 법제적인 서술기술상 사료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어 기호성을 향상하거나 다른 사료와의 효과적인 배합을 위하여 사용 되어 사료 자체의 효용을 증진 시키는 향미제 · 착색제 · 결착제 등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체내에서 약리학적 · 생리학적 상호작용 작용을 통하여 상승 · 길항작용에 의하여 섭취된 사료의 섭취율을 향상 시키거나 체내 환경을 개선으로 함으로서 성장을 촉진 시키는 의약품을 정의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첨가제의 “사료의 효율증진”이라는 정의와는 음성학적인 유사성 이외에 어떠한 유사성도 부여할 수 없는 정의임.
- “사료의 효능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라는 보조사료의 정의를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 비타민 · 항생제는 물론 사료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보조사료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 사료관리법상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의하여 동물약품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분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행규칙을 번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② 제3조의2(배합사료의 용도) : 주문용배합사료

- 동 조항이 배합사료를 축종별로 구분·규정한 조항 이라면 “주문용”이라는 축종이 축산법 등에 정의된 용어인지 확인키 어려우며
- 주문용배합사료가 주문에 의하여 비타민류·아미노산류·광물질 등의 보조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사료라면 누가 주문하여 누가 납품하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 배합사료업체가 주문하여 배합사료공장이 납품 하든지, 아니면 보조사료업체가 납품 하던지 새로운 유통단계가 추가될 수 있는 조항으로 유통 단계 간소화라는 개혁의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 또한 비타민류·아미노산류·광물질 등이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는 상황에서 취급 논리상 보조사료 업체에서 개별 원료의 소분판매나 주문에 의하여 몇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약사법의 제약(製藥)의 권한이 보조사료 업체에 부여되게 되어 동물약품 업체를 유통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여 사료가격을 인하하고 축산농가의 생존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농림부 명분은 특정 업종의 업권만 신장 시키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인 동물약품 업계의 도산만을 유도하는 결과의 초래가 우려됨.

③ 제4조의2(사료의 안전성 확보) : “사료성분규격” 설정

- 동조항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료관리법(법률 제4849호 : 94. 12. 31) 제3조제1항에 사료의 안정성 확보는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 “안정성”과 “안전성”을 동일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존제·항응고제·결착제 등의 성분·규격을 고시한다는 것인지 모범과 시행령상의 용어의 차이로 인한 혼돈 여지가 있으며
- 예로서 식품위생법의 경우 모든 식품은 의약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법령상에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표시기준을 정하여 공전을 고시하고 있으며,
- 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 또한 체내에 약리학적으로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종의 성분중 한 개의 성분이라도 대한약전에 수제되어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낼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규격·기준을 설정 하여야 하는 조문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없는 성분규격을 안정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분규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유의적인 조항을 시행규칙상에 신설 함으로 모든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에 대한 규격·규격·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 순리적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에 사료첨가제를 분류한 후 선별적인 일부 사료에 대한 성분규격 설정 방식 보다는 기존의 단미·보조사료에 대한 성분규격을 설정·고시한 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료로 분류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의 개별 성분별로 성분규격을 설정하여 보조사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농림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협회 기획 · 조사부

1. 사료첨가제는 적정 품질관리하에서 생산 · 유통되어야 함.

- 가. 사료첨가제는 생체에 약리학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순수 · 분리 · 정제된 물질로서 가축의 식이로 공급되는 사료와는 엄연히 구분됨.
- 나. 사료첨가제는 특정 성분이 고농도로 집적화 되어 있어 이의 취급 · 사용상에 있어 적절한 품질관리 및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없는 물성을 가진 의약품 임.

2. 사료첨가제는 “안정성(Stability)” 개념이 아닌 “안전성(Safety)”의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함.

- 가. 사료첨가제는 본래의 물성을 유지하는 “안정성” 관리는 물론이고 살아 있는 생체에 투여 한다는 점과 축산식품으로 사람에게 공여 된다는 점에서 가축과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성”의 개념으로 취급 · 사용되어야 함.
- 나. 사료중의 하나인 보존제의 사용 개념과 같은 “안정성”의 개념만으로 사료첨가제를 관리할 경우 가축의 약화사고와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없음.

3. 사료첨가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감소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 되어져야 함.

- 가. 사료첨가제가 가축의 식이를 관리하는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의 개념으로 취급 · 관리될 경우, 과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부족으로 인한 불량 · 저급의 축산식품 생산으로 인한 국내산 축산식품의 소비 감소는 물론이고
- 나.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위생수준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불신으로 축산업의 붕괴를 가속화 하게 됨.

4. 사료첨가제는 단순 경제논리나 가축의 식이로 이해 되어서는 아니되며 약리학적 차원에서 관리 · 취급 되어야 함.

- 가. 농림부의 유통간소화의 취지는 무우 · 배추와 같이 단순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에서는 소기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 나. 무우 · 배추와 경우가 다른 사료첨가제는 100여종의 원료를 제제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조하여 유통된다는 점과 사료에 백만분의 1의 단위(ppm 단위)로 첨가된다는 점에서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논리만으로 이해 되어져서는 않되며
- 다. 제제학적인 제조 · 품질관리 기술과 생체내 상호작용 등을 감안하는 약리학적인 개념으로 이해 되어야 그 적정취급과 사용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5. 사료첨가제는 항생 · 항균제가 아닌 영양 사료첨가제의 경우도 유효성분간 상호작용 및 생체내 이용률과 배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하여야 함.

- 가. 사료첨가제는 항생 · 항균제는 영양 사료첨가제는 그 사용대상이 불특정한 대담위의 가축에 장기간 사용된다는 면에서 특히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나. 비타민의 경우 각 성분간의 상호작용과 과다 복용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아미노산의 경우도 오 · 남용시 신장 기능과 신경계에 작용하여 “아미노산 뇨증”이나 “뇌척수염” 등을 유발하며
- 다. 미량광물질의 경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중금속 등의 정제 정도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천차만별 일 수 있는바, 일례로 황산동의 경우는 수질처리제로 사용하는 5수 황산동에서 부터,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1수 황산동, 임신부의 영양제로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다양한 품질의 차이가 있으며 가격도 1,000배에서 10,000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 라.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만을 강조하여 수질처리제로 사용하는 광물질을 사료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비소 · 카드뮴 · 납과 같은 중금속이 대량으로 사료로 혼입되게 되고 가축의 폐사는 물론, 축산식품내 잔류로 국민보건에 중차대한 위해를 미치게 됨.

6. 사료첨가제는 동물약품으로서 사료로 이관시 사료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품질관리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가. 동 개정명(안)으로 보아 미량광물질제 · 비타민제 · 아미노산제 · 생균 · 효소제 등이 단미 · 보조사료로 분류되어 결국 배합사료공장에서 직접 구입 ·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통 비용 절감으로 인한 사료가 인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 나. 결과적으로 동물약품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이중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단미 · 보조사료 업계의 업권신장과 사료첨가제의 품질관리와 취급 · 유통관리 체제만을 포기하게 됨.

7. 사료첨가제는 현재의 사료위생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안전법”을 입법화한 후 “사료첨가물”로 분류 되어야 함.

현재 사료의 곰팡이 · 잔류 농약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첨가제를 사료의 일부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일본과 같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사료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킨 이후에 사료첨가제를 사료첨가물로 분류, 취급 ·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